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9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하고 제29호를 제30호로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9호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제23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동수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제2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8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하고 제1호의 제목을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으로 하며 같은 호 1)바) 중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1)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 및 마)에도 불구하고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1호가목4)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충전설비는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 압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일 것

별표 5 제1호가목6)라) 중 “자동차의 오발진”을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 또는 연료전지를 정지시키고, 이동수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이동수단의 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며,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 압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것

별표 5 제1호나목2)라) 중 “수소가스를”을 “수소를”로 하고 같은 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선박에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 외에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①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할 것
- ②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밋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상태를 확인할 것
- ③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할 것
- ④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금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1)나)·1)마)·7)나)”를 “(1)나)·1)마)·1)바)·1)아)·7)나)”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제목을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6) 중 “저장탱크”를 “압력용기”로 하며, 같은 목 8) 중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을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으로 하고, 같은 목 8)을 9)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 3)에도 불구하고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2호나목3) 중 “수소자동차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소 성분”을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에 충전하는 수소에는 수소연료전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을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1)마)·7)나)”를 “(1)마)·1)바)·1)아)·7)나)”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수단의 연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동수단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87.5MPa 이하일 것

별표 14 제4호나목 중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이동수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고압가스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1) 비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동수단의 연료장치용 용기 외면에는 그 용도를 “이동수단용”으로 표시할 것

별표 31 제4호 중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을 각각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세부내용란 중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세부내용란 중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제1호가목1) 바·아) 및 제2호가목8)을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에서 같다)은 시행일 이후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2. 1. 21.>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급	3,0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팔다리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피부 이식술(피부·피하조직을 전부 잘라내지 않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위팔뼈몸통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췌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영치엉덩관절 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용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정강이뼈 복사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발목발허리뼈사이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용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000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파열 6. 위팔뼈 가쪽위관절용기 뼈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개뉴 골절 등을 말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무릎관절부위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4. 발허리뼈 골절

		5. 위팔뼈몸통 골절 6. 노뼈 먼쪽 골절 7. 자뼈 몸쪽부위 골절 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해 9.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10.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 11. 아킬레스힘줄 파열 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간부분 골절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5. 두덩뼈·궁둥뼈·장골의 단일 골절 6. 단순 슬개골 골절 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 골절은 제외한다) 8.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10.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중간부분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절상과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사이 관절 탈구 7. 발목관절 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위팔뼈 위관절염기 펌 골절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 골절 5.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갈비뼈 골절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족근골 골절(목말뼈, 중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 골절 9. 발목관절부위 뺨 10. 갈비뼈 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뼈어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손목관절 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사이 관절 탈구 4. 손목관절부위 뺨 5. 모든 불안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뺨 2. 손가락관절 탈구 및 뺨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골편(骨片)이 어긋나지 않은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질병·부상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등 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9,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1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한쪽시아결손·시아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 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	-----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음 각 호와 같다.	-----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2.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u>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2.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신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동수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③ (생략)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정기검사) ①· ② (생략)	제30조(정기검사) ①· ②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④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u> 정기검사 기준: 별표 5	2.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수시검사) ①· ② (생략)	제31조(수시검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③ -----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u> 수시검사 기준: 별표 5	2.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생 략)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 ----- -----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u>8천만</u> <u>원</u> .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 로 한다.	1. ----- <u>1억5</u> <u>천만 원</u> .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5]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u>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 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	[별표 5]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

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 ---
1. <u>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수소를</u> <u>제조·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u>	1. <u>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u> <u>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u>
가. 시설기준	가. -----
1) 배치기준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u>5m</u> 이 <u>상의</u> 거리를 유지할 것	바) ----- ----- <u>5m</u> 이 <u>상의</u> 거리를 유지하거나 <u>거리를</u> 유지하지 못하는 <u>구간에</u> 방호벽을 설치할 것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u>아) 가) 및 마)에도 불구하고 폭</u> <u>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u> <u>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u> <u>는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및</u> <u>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유</u> <u>지하지 않을 수 있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가스설비기준	4) 가스설비기준

가) ~바) (생략)	가) ~바) (현행과 같음)		것
<신설>	사) 충전설비는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 압 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일 것	나) 수소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 이 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 게 충전할 것	나) 이동수단의 용기는 통상 온 도에서 최고충전압력 이상 으로 충전하지 아니하며,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 가 없는 온도, 압력 및 유 량으로 충전할 것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6) 사고예방설비기준	6) -----	라) 수소가스를 제조할 때에는 정제장치 및 압축가스설비 의 출구에서 주요성분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 이 분석할 것	라) 수소를-----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마) 선박에 수소를 충전하는 경 우에는 가)부터 라)까지 이 외에 다음 기준에 따를 것
라) 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 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 ----- -----		①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 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 시할 것
마) ~ 사) (생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나. 기술기준	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 및 충전기준	2) -----		
가) 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 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 키고, 자동차의 수동 브레 이크를 채울 것	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 및 연료전지 를 정지시키고, 이동수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할		

④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금할 것

다. —————

1) -----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나)·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 1)나)·1) <u>마)·1)바)·1)아)·7)나)</u> ----- ----- ----- -----

다,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나)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4)바)(가스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한다), 5)바)(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한다)

나) 완성검사	(생략)
다) 정기검사	(생략)
라) 수시검사	(생략)

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6) 압력용기(반응 · 분리 · 정제 · 증류 등을 위한 탭류로서 높

[illegible]

나) 완성검사	(현행과 같음)
다) 정기검사	(현행과 같음)
라) 수시검사	(현행과 같음)

2.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6) -----

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u>저장탱크</u> 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u>압력용기</u> -----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8) 1), 3)에도 불구하고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u>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u>
8) 그 밖의 <u>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u> 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3)가)·3)나)·3)라·6)가)·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9) ----- <u>저장식 수소연료 충전</u> ----- ----- -----
나. 기술기준	나.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수소자동차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소 성분</u> 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u>이동수단 중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것에 충전하는 수소는 수소연료전지에</u>

적합하지 않은 성분-----

4) 그 밖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가목[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1) 제1호가목 중 1)마)·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4)바)(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4) -----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

다. 검사기준

1) -----

--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1) ----- 1)마)·1)바)·1)아)·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한다), ----- ----- ----- ----- ----- -----

2) (생략)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
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
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
44조제2항 관련)

2) (현행과 같음)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
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
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
44조제2항 관련)

가. ~ 아. (생략)

1) (생략)

2) 최고충전압력은 35MPa(산소 용은 20MPa)이하일 것 <단서 신설>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1. ~ 3. (생략)

4. 점검 방법

가. (생략)

나.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_____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이동수단의 연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동수단에 고정하여 사용
하는 것은 87.5MPa 이하일 것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이동수단- -----)

아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점검기록의 작성·보존

가. (생략)

나.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고압가스자동차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생략)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의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cm 이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이동수단-----)

-----)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1. ~ 4. (생략)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7. (생략)			
<신설>			

[별표 31]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 3. (생략)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 6) (생략)	(생략)
	7)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	

1) -----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7. (현행과 같음)			
8. 이동수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이동수단용"으로 표시할 것			

[별표 31]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가. 전문교육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수소연료 충전시설	

	원	
나. 특별교육	1) ~ 2) (생 략)	신규 중사 시 1회
	3)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u>	
	4) ~ 5) (생 략)	
다. 양성교육	1) ~ 5) (생 략)	
	6) <u>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가 되려는 사람</u>	
	7) (생 략)	
비 고		
1. ~ 7. (생 략)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 별	보험금액	상해 부위
1급	<u>1,500만원</u>	(생 략)
2급	<u>800만원</u>	(생 략)
3급	<u>750만원</u>	(생 략)
4급	<u>700만원</u>	(생 략)

나. - -----	1) ~ 2) (현행과 같음)	----- -----
	3)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4) ~ 5) (현행과 같음)	
다. - -----	1) ~ 5) (현행과 같음)	
	6) <u>수소연료 충전시설</u> ----- -----	
	7) (현행과 같음)	
	- - 1. ~ 7. (현행과 같음)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

---	-----	-----
--		
---	<u>3,0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2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000만원</u>	(현행과 같음)

5급	<u>500만원</u>	(생 략)
6급	<u>400만원</u>	(생 략)
7급	<u>250만원</u>	(생 략)
8급	<u>180만원</u>	(생 략)
9급	<u>140만원</u>	(생 략)
10급	<u>120만원</u>	(생 략)
11급	<u>100만원</u>	(생 략)
12급	<u>60만원</u>	(생 략)
13급	<u>40만원</u>	(생 략)
14급	<u>20만원</u>	(생 략)

비고 1. ~ 4. (생 략)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u>8,000만원</u>	(생 략)
2급	<u>7,200만원</u>	(생 략)
3급	<u>6,400만원</u>	(생 략)
4급	<u>5,600만원</u>	(생 략)
5급	<u>4,800만원</u>	(생 략)

---	<u>900만원</u>	(현행과 같음)
---	<u>700만원</u>	(현행과 같음)
---	<u>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300만원</u>	(현행과 같음)
---	<u>240만원</u>	(현행과 같음)
---	<u>2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60만원</u>	(현행과 같음)
---	<u>120만원</u>	(현행과 같음)
---	<u>80만원</u>	(현행과 같음)
---	<u>50만원</u>	(현행과 같음)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2. -----

---	-----	-----
---	<u>1억5천만원</u>	(현행과 같음)
---	<u>1억3,500만 원</u>	(현행과 같음)
---	<u>1억2천만원</u>	(현행과 같음)
---	<u>1억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9,000만원</u>	(현행과 같음)

6급	<u>4,000만원</u>	(생 략)
7급	<u>3,200만원</u>	(생 략)
8급	<u>2,400만원</u>	(생 략)
9급	<u>1,800만원</u>	(생 략)
10급	<u>1,500만원</u>	(생 략)
11급	<u>1,200만원</u>	(생 략)
12급	<u>1,000만원</u>	(생 략)
13급	<u>800만원</u>	(생 략)
14급	<u>500만원</u>	(생 략)

비고 1. ~ 10. (생략)

---	<u>7,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6,000만원</u>	(현행과 같음)
---	<u>4,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3,800만원</u>	(현행과 같음)
---	<u>2,700만원</u>	(현행과 같음)
---	<u>2,3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9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500만원</u>	(현행과 같음)
---	<u>1,000만원</u>	(현행과 같음)

비고 1. ~ 10. (현행과 같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부24(www.gov.kr)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 신청서

※ 비당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치 리 기 7일 간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세 부 내 용	사업소 소재지
	허가(신고·등록)번호
	허가(신고·등록)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 고압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판매시설 [] 고압가스 수입시설
	중간검사 범위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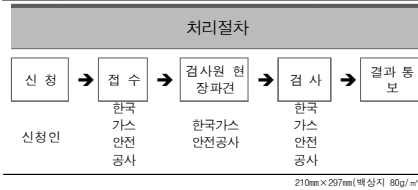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부24(www.gov.kr)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 신청서

※ 비당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치 리 기 7일 간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세 부 내 용	사업소 소재지
	허가(신고·등록)번호
	허가(신고·등록)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 고압가스 제조시설 [] 수소연료 충전시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판매시설 [] 고압가스 수입시설
	중간검사 범위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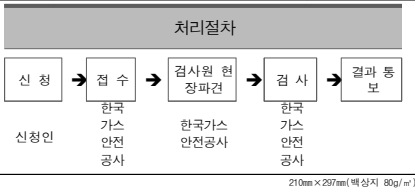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 호서식] <개정 2016.2.25>

http://c/o/b
er.kgs.or.
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 호서식] <개정 2016.2.25>

http://c/o/b
er.kgs.or.
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성 검사 신청서
[] 정기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를 합니다.

입 영 수 번	접수일자	처 리 7 일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사제세금징수
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성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세부내 용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등록)번호		허가(신고·등록) 연월 일
	사업소 소재지			
	검사대상 시설			
	[] 고압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고압가스 냉 동제조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판매시설 [] 고압가스 수입 시설			
	[] 용기 제조시설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냉동기 제조시 설			
	[] 특정설비 제조시설			
	검사처방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
30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환성검사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귀하

**한국가스안전공사사업
검사기관의 장**

첨부서 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 스 안전 관리법」 제34조제 2항에 따 라 산업 통상자원 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	----	--	---

지리점차

신 청

→

접 수

→

현지검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또는 결
과 통보

신청인

한국가스안
전공사
검사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공사
검사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공사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
30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환성검사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귀하

**한국가스안전공사사업
검사기관의 장**

첨부서 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 스 안전 관리법」 제34조제 2항에 따 라 산업 통상자원 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	----	--	---

지리점차

신 청

→

접 수

→

현지검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또는 결
과 통보

신청인

한국가스안
전공사
검사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공사
검사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공사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제1호가목 1)바·아) 및 제2호가목8)을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에서 같다)은 시행일 이후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